

●법무부령 제1167호
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10월 01일

법무부장관 인
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(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)”을 “지방공소청장(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3조 전단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○○○검찰청 검사장(지청장)”을 “○○○지방공소청장(지청장)”으로, “지방검찰청(지청)”을 “지방공소청(지청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“○○검찰청 검사장(지청장)”을 각각 “○○지방공소청장(지청장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“검찰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뒷면 중 “○○○ 지방검찰청(지청)”을 “○○○지방공소청(○○○지청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중 “○○검찰청 검사장(지청장)”을 “○○지방공소청장(지청장)”으로, “검찰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“○○○지방검찰청 검사장(지청장)”을 “○○○지방공소청장(지청장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중 “○○○지방검찰청 검사장(지청장)”을 “○○○지방공소청장(지청장)”으로, “지방검찰청(지청)”을 “지방공소청(지청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중 “○○검찰청”을 “○○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 중 “○○○지방검찰청 검사장(지청장)”을 “○○○지방공소청장(지청장)”으로, “검사장(지청장) 결정”을 “지방공소청장(지청장) 결정”으로, “지방검찰청(지청)”을 “지방공소청(지청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 중 “○○검찰청”을 “○○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7호서식 중 “○○○지방검찰청”을 “○○○지방공소청”으로,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중 “○○검찰청”을 각각 “○○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중 “○○○검찰청”을 각각 “○○○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2호서식 중 “○○○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“○○○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3호서식 중 “검찰사건번호”를 “사건번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, 2026. 10. 2. 시행)되고,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·직무 범위·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「공소청법」이 제정(법률 제21490호, 2026. 3. 24. 공포, 10. 2. 시행)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.
<법무부 제공>